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7
----------	-----

2009년 6월 29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09년 6월2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경섭 물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정의를 현행 하수도 법의 하수도 정의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주요골자

- 1)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맞추어 '하수도사업'의 사업범위를 수정함.(안 제2조)
- 2)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세출 항목 대상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수정·보완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본 개정안은 2009.6.11일 시장이 제출하여 2009.6.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됨(2007.9.28 시행)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하수도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 제5조(세출)의 개정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정이므로 재원이 부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더욱 자금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물재생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인건비¹⁾ 등의 비사업성 항목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향후 예상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사업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향후예상)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100,058	2,647	3,800	2,081	5,170	3,220	5,300	21,740	36,000	20,100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	8,028	2,647	3,800	1,581	-	-	-	-	-	-
중랑분뇨처리장 탈취시설개선	8,530	-	-	500	5,170	2,860	-	-	-	-
단지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8,500	-	-	-	-	360	2,400	5,740	-	-
서남분뇨처리시 설 지하화사업	75,000	-	-	-	-	-	2,900	16,000	36,000	20,100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물재생 관련 부서 공무원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건비	24,437	23,788	24,186	24,446	22,063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7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분뇨처리시설”이 하수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하수도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4. 16. ~ 5. 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대상 : 규제사무 없음
 -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

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하수도사용료 · 점용료 ·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하수도 개량 및 정비비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차입금 상환비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제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u>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u>하수도사업</u> 이라 함은 <u>하수를 배제</u>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u>하수관거</u> , <u>하수종말처리시설</u> 기타의 <u>공작물</u> 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u>하수도사업</u> 이란 <u>하수와 분뇨를 유출</u>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u>하수관거</u> , <u>공공하수처리시설</u> , <u>분뇨처리시설</u> 등 <u>공공하수도</u>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관리·운영) <u>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u>하수도사용료</u> , <u>점용료</u> , <u>부담금</u> 및 <u>과태료</u> 2.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u>하수도사용료</u> · <u>점용료</u> · <u>부담금</u> 및 <u>과태료</u> 2.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4. 기타 수입금</p> <p>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수도사업 관련</u>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하수도 개량 및 정비비 3. <u>하수종말처리시설</u> 설치 및 유지관리비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4. 차입금 상환비</p> <p>5.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p>	<p>4. 그 밖의 수입금</p> <p>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수도사업 관련</u>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하수도 개량 및 정비비 3. <u>공공하수처리시설</u> 설치 및 유지관리비 4. <u>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u> 5. 차입금 상환비 6. <u>그 밖에</u>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p>제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	--------------------------------------------------------------------------------------------------------------------------------------------------------------------------------------------------------------------------------------------------------------------------------------------------------------------------------------------------------------------------------------